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0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황 희·안규백·한민수

강선우 • 이용선 • 어기구

박 정・차지호・부승찬

정성호·조 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 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 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사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
	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
	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점
	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